

 보 도 자 료  <i>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</i>			
보도 일시	2022. 7. 5.(화) 석간 2022. 7. 5.(화) 06:00	배포 일시	2022. 7. 4.(월) 오후
담당 부서	해양환경정책관 해양공간정책과	책임자	과 장 황준성 (044-200-5260)
		담당자	서기관 박솔잎 (044-200-5266)

공유수면 점용·사용에 이해관계자 의견 듣게 된다

- 7.5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 및 하위법령 시행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개정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이 7월 5일(화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 법령 시행에 따라, 공유수면관리청은 어업·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를 할 때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* 배타적 경제수역(EEZ), 국가관리무역항·국가관리연안항 내 공유수면: 해양수산부장관
지방관리무역항·지방관리연안항 내 공유수면: 시·도지사
그 외 공유수면: 시장·군수·구청장

바다·바닷가·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, 이를 점용·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, 해변을 이용한 관광시설 등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.

그러나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용·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, 기존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, 공유수면 점용·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했다.

이에 지난 1월 4일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었으며,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을 거쳐 7월

5일부터 법률 및 하위법령을 시행하게 되었다.

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,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·사용 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해양환경·수산자원·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,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. 또한, 점용·사용 허가를 했을 때 어업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.

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“공유수면 점용·사용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,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하여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사례

□ 추진배경

- 공유수면 점용·사용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, 점용·사용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공유수면법」 개정*

* '22.1.4 개정, '22.7.5 시행

-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견수렴의 구체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, 7월 5일부터 개정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

□ 주요 내용

- (적용대상) 7월 5일 이후 점용·사용허가(협의·승인*)하는 경우로서, 환경·어업·경관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**

*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협의 또는 승인(국가나 지자체가 공용·공공용·비영리 목적으로 점용·사용하는 경우) 시에도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준용

**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·생태계·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,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(법 제8조제7항)

- (방법) ①공고 및 ②어업인 의견조사를 모두 실시

- (공고·열람) 관보(지방해수청) 또는 공보(지자체),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점용·사용허가(협의·승인) 관련 사항*을 14일 이상 공고

* 신청자, 신청지역, 규모 및 내용, 목적 및 기간, 의견제출 기간·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**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를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

- (어업인 의견수렴) 어업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의견조사 실시

* 수협중앙회 및 조합, 그 밖에 의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 관련 기관·단체 등을 통해 조사할 예정

- (허가 등 처리기간) 기존에 14일 또는 7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용·사용허가 처리기간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간은 제외*

* 기존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에 드는 기간만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